

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2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	2009. 6. 29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(별정직공무원)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'08.12.31)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 마련
- 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함(안 제11조)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하며,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면 분할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다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-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평정하고, 평정 결과를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가능
- 라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함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, 제7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1조의3, 제13조,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, 제3조, 제25조의2, 제31조, 제41조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
-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
-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9. 5. 19. ~ 2009. 6. 9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”로, “임용요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”를 “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 연령,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 제2조 제2항 제2호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임용등에 관하여는”을 “임용 등에 관하여”로, “조례가”를 각각 “조례로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”을 “법 제2조제3항제2호”로, “조례가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별정직 공무원중”을 “별정직공무원 중”으로, “1급 내지 9급 상당”을 “1급부터 9급 상당까지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 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준에 관하여는”을 “기준에 관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 “임용절차등”을 “임용절차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인사기록에 관하여는”을 “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7조 전단 중 “제3조 제1항”을 “제3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전보제한에 관하여는”을 “전보제한에 관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달하는”을 “이른”으로, “있는 경우에는”을 각각 “있으면”으로, “당연 퇴직된다”를 “당연히 퇴직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각호의 사유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당연 퇴직된다”를 “당연히 퇴직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직권에 의하여”를 “직권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휴가기간이상”을 “휴가기간 이상”으로, “직무를 못할만한”을 “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”를 “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”로, “복귀하지 아니하거나”를 “복귀하지 않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2.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된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3제1항 중 “휴직중”을 “휴직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에 따라”로, “소멸된 때에는”을 “소멸되면”으로 “30일이내”를 “30일 이내”로, “이를 신고하여야”를 “신고하여야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징계에 관하여는”을 “징계에 관한 사항은”으로, “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임용함에 있어서는”을 “임용하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요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----- -----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 연령, 그 밖에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(이하 "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</p> <p>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<u>조례</u>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<u>조례</u>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①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임용 등에 관하여 ----- ----- <u>조례</u>로 ----- ----- <u>조례</u>로 ----- 따른다.</p> <p>③ ----- 따라 ----- ----- 법 제2조제3항제2호----- <u>조례</u>에서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</p>	<p>제4조(임용자격) ① ----- 각 호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<u>별정직공무원 중 ----- 1급부터 9급 상당까지-----</u> <u>----- 해당 -----</u> <u>----- 그러하지 -----</u> <u>----- 그렇지 않다.</u></p> <p>③ ----- 기준에 관한 사항은 ----- -----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</u> <u>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5조(임용절차등)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<u>제5조(임용절차 등) -----</u> ----- 인사기록에 <u>관한 사항은 -----</u> -----.</p>
<p><u>제7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<u>제7조(전보) ----- 제3조제1항---</u> ----- -----. ----- 전보 <u>제한에 관한 사항은 -----</u>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근무상한 연령) ① <u>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<u>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</u></p>	<p>제8조(근무상한 연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.</u></p> <p>② ----- --- <u>이른</u> ----- --- <u>있으면</u> ----- ----- <u>있으면</u> ----- ----- <u>당연히 퇴직한다.</u></p>
<p>제9조(당연퇴직) <u>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</u></p>	<p>제9조(당연퇴직) ----- 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<u>당연히 퇴직한다.</u></p>
<p>제10조(직권면직) <u>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</u></p> <p>2. <u>직제·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될 때</u></p> <p>3. <u>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</u></p> <p>4. <u>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제10조(직권면직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 <u>직권으로</u> -----.</p> <p>1. -----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-----</p> <p>2. <u>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된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</u></p> <p>3. <u>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----- ----- 복귀하지 않거나</u>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1조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</p> <p>2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</p>	<p><u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</u></p> <p>① <u>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1조의2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u></p>	<p><u>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 중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1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소멸되면 30일 이내----- -- <u>신고하여야</u> ----- 지체 없이 -----.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</u> <u>당연히 복직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</p> <p>① <u>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12조의2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<u>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징계) <u>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13조(징계) ----- <u>징계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-----.</u></p>
<p>제14조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 <u>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4조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 ----- <u>임용하는 경우에는 -----</u> <u>---- 않는다.</u></p>